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535

발의연월일: 2022. 7. 20.

발 의 자: 안병길·강민국·김선교

김승수 · 김학용 · 박대수

박 진ㆍ이 용ㆍ이종성

이주환 • 전봉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 10조3항은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6.10. 제주경마장에서는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았으면서, 애초 출전명단에 없었던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음. 사고 이후 출전하지 않은 말의 마권을 구매한 고객들은 환불을 받았지만, 애초 명단에 없었던 말의 출전으로 인해 경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마권 구매고객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음.

이에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안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마권을	제10조(투표의 무효) ①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
	<u>한 경우</u>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